

청렴 · 인권 주의보(2024년 4차)



이해충돌방지법 알아보기

□ 이해충돌방지법이란?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 ※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 5. 18. 제정되어 2022. 5. 19.부터 시행

○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1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자체 및 지방의회, 교육청,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공립학교 등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2호)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국립·공립학교장과 교직원

O 이해충돌방지법 주요내용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행위기준(10개)
- ☑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등

이해충돌방지 세부 행위기준(10개)

신고 및 제출 의무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한 및 금지 행위

- ⑥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⑦ 가족 채용 제한
-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⑩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 위반행위 신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신고기관: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및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방법: 신고 취지를 밝힌 기명의 문서로 신고 대상 및 증거 제출

ㅇ 신고자 보호

| 신고 방해 · 취소강요 금지 | 불이익 조치 금지 | 책임 감면 |
|-----------------|-----------|-------|
|-----------------|-----------|-------|

ㅇ 신고자 보상

| 최대 30억의 보상금 | 최대 5억 포상금 | 치료비용 · 이사비용 등 구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해충돌방지법 바로가기

② 청탁금지법 알아보기

□ 청탁금지법이라?

- :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근절을 통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

O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

공직자등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 공무수행사인: 공직자가 아니지만, 공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개인으로 '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준용
-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O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 <부정청탁의 금지>
 - · 금지내용: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제재내용

| 제재대상 | | 제재의 종류 |
|--|---------------|--------------------------------|
|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 \rightarrow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공직자등) | \rightarrow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 \rightarrow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예외사유

- ·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 ·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하는 행위
-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u>청탁금지법 바로가기</u>

청탁금지법 알아보기 2

- <금품등 수수 금지>
- 금지내용
- 1)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금지
- 2)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등 수수 금지
- 제재내용

제재대상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

제재의 종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 예외사유

-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또는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액범위 안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rightarrow

- * 음식물 5만원, 선물 5만원(단,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5만원), 경조사비 5만원(단, 화환 조화는 10만원)
-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 공직자등의 친족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 · 직원상조회·동호인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ㆍ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 그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 · 신고대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
- · 신고의무: 직무 관련 외부강의 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의무 불이행시 징계처분

<외부강의자>



<소속기관장>

O 신고대상: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 O 신고기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까지**

· 사례금 상한액: 초과사례금 수수 시 신고 및 반환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외부강의등 사례금 1시간 상한액>

·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산 임직원: 100만원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40만원

☞ 청탁금지법 바로가기